

『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0월 23일

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조례로 위임된 수익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시 수익계약 할 수 있는 조항 신설
(안 제20조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 사항 반영
(안 제35조, 제38조, 제38조의2, 제63조, 제63조의2)
 - 행정자치부장관 → 행정안전부장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및 산림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『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수익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